

유럽연합(EU)의 어업협력협정 현황과 시사점

- OECD에서 “EU의 어업협력협정의 영향에 관한 비교연구(Comparative Study on the Impact of EU Fisheries Partnership Agreement)”의 주요 결과가 발표되었음.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우리나라 원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시사점을 찾아 보고자 함

■ 유럽연합의 어업협력협정 체결은 감소추세

- EU는 기존 입어협정이 체결국의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판을 수용하여 2002년부터 어업협력협정을 추진하고 있음
 - 총 17개 어업협력협정 중 13개는 ACP국가(African, Caribbean and Pacific Countries)들과 체결하였는데 주로 저개발 국가의 어업을 지원하는 성격을 갖고 있음
 - 1990년대 EU는 연간 2억 7,000만 유로를 입어비용으로 사용하였으나 현재에는 연간 입어료를 포함한 지원비용으로 1억 6,000만 유로를 사용하고 있음

■ 어업협력은 Win-Win, 비용보다 이익이 더욱 높아

- 어업협력협정을 통해 양국 모두 Win-Win을 할 수 있는데, 원양조업국(EU)의 경우 어획활동 기회 증가, 고용창출, 가공원료 조달 등과 같은 이점이 있고, 연안국(어업협정 대상국)의 경우 입어료 수입, 고용 및 서비스 창출, 부가가치 창출 등이 있음
 - 하지만 어업협력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과잉어획 및 불법어업, 과잉어획능력 수출(Exporting excess capacity), 연안어업과의 충돌, 정부 보조금 지급 등임
- 실제적으로 EU의 어업협력협정에 소요된 비용과 이익을 비교해보면 다랑어의 경우 톤당 협정가격은 100유로 정도이나 시장가격은 770~1,700유로 정도이므로 입어를 통한 이익이 비용보다 매우 높음

■ 입어협정과 어업협력협정 비교

- EU의 어업협력협정을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였는데
 - EU의 어업협력협정이 더욱 투명하고, 지속적인 이윤을 제공하고 있다고 함

- 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입어협정인 경우 원양업자가 더욱 많은 입어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모니터링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비교 분야	입어협정	어업협력협정(FPA)
어업	참치 및 다수어종	참치(일부 다수어종 어획 잔존)
재정 지원	어업기회에 근거한 지원	어업기회 + 정책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연안국민 고용	경우에 따라 연안국 선원 고용	연안국 또는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도서국 선원 고용 필수
투자	없음	합작회사 장려
과학 협력	필요시 추진	공동 과학위원회 또는 실무그룹 구성 및 연례회의 개최
감시·감독	협정 별로 차이가 있음	어선모니터링시스템 의무화

■ 우리나라도 어업협력협정 개념 도입 검토 필요

- 우리나라의 경우 EU처럼 포괄적인 어업협력협정을 통해 원양선단이 입어하여 조업하기보다는 주로 입어협정을 통해 각각의 원양업자가 입어료 지불함으로써 조업활동을 하고 있음
 - 이는 원양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어가 상승 요인이 되어 국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됨
 - 더욱이 연안국들이 자국 EEZ내에 어업자원을 보호하는 추세 그리고 입어료를 통한 쿼터 배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시각이 많아짐에 따라 원양선단의 조업가능 어장은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 따라서 기존의 입어협정을 통한 원양선단의 조업권 확보는 한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됨
- 우리나라도 입어협정을 체결 대상국의 포괄적인 개발을 지원하는 어업협력협정으로 변환하여 정부가 입어료를 포함한 지원금을 제공하여 원양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우리나라 원양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경영비 관련 재정적인 보조는 현재 WTO/DDA 협상에서 논의되고 있는 금지 보조금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으나
 - EU처럼 정부가 지원하는 수산협력협정 형태의 자금은 허용보조금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음